



Web Contents



2024년 12월 14일 06시 51분

여성정책

여성복지정책

여성폭력방지

가족지원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위원회 구성 운영

여성폭력방지정보안내

여성권익증진시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신고안내

■ 신고·고소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안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아동상당소, 특별법에 의한 상당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등의 장 및 그 종사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가정폭력범죄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폭력행위자가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없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신고 전화번호

- 여성1366 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으로 전화하세요(24시간 서비스 가능)
- 112로 전화하세요 : 경찰에게 가정폭력을 신고,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유형

■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의 피해 대상은 주로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피해 상황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내폭력은 가족체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부녀상당소 이용자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우가 61.1%로 나타났습니다.

■ 신체적학대

-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 꼬집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사지를 비트는 행위
-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 담배불로 지지는 행위

-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 흥기를 휘드르는 행위

□ 언어와 정신적 학대

-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 말로 공격, 헐뜯, 위협하는 행위
-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 희롱하는 행위
-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성적학대

-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기타 유사 성교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방임

-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등

처리절차

□ 조사후 조치

- **응급조치** :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임시조치의 신청** :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 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사건송치** :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당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분의 종류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검사

-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 형사처벌을 위한 기소
- 가정보호사건 처리 등 세 가지 중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가정보호사건처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는 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하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도 있다. 법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한 결과 특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호·2호는 2월을 초과할 수 없고, 3호·4호는 1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1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호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4호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조사·심리

- 가정보호조사관제도 : 행위자·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심문이나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
- 전문가에의 의견 등 조회 : 행위자의 전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조회
- 동행영장발부 : 조사·심리에 필요한 때 법원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불처분의 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1호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친고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반의사불벌죄)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
- 2호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 3호 : 사건의 성질 및 행위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부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호·2호·4호·5호·6호·7호가 비추침보이 기가은 수월을 초과할 수 있으며 2호가 사회보사, 수감평력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3호 및 7호의 조항은 조항의 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항의 시작일은 2008년 10월 1일을 초과할 수 없다. 1호 및 2호의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제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1호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2호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3호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감명령
- 4호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5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6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7호 :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MokPo - Si
Web Contents

